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30
----------	-------

발의연월일 : 2025. 7. 22.

발 의 자 : 이수진 · 김문수 · 송옥주
남인순 · 김병주 · 서영석
김선민 · 이건태 · 추미애
전종덕 · 서미화 · 백혜련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무소득배우자이거나 27세 이전까지 학업·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적용이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무소득자를 혼인 여부에 따라 가입자와 적용제외자로 나누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조치이며, 해당 적용제외 제도로 인하여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무소득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제도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최초 가입 연령이 된 18세 청년에 대하여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무소득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함(안 제3조제1항제19호나목 및 제9조제1호·제3호 삭제,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5호 삭제).
- 나. 18세가 되어 국가로부터 연금보험료를 3개월 지원받은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1항제8호 신설).
- 다. 소득이 없는 18세인 사람에 대하여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함(안 제100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 라. 18세가 된 날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사람에 대하여 3개월을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함(안 제100조의5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과 다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9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9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00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92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1호, 제4호”를 “제9조제4호”로 한다.

제100조의5를 제100조의6으로 하고, 제10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① 18세가 된 날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18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간 해당 월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

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 중에 본문에 따른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거나 제21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18세가 된 날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사람은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3개월에서 제1항 본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개월 수를 제외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지역가입자의 해당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전액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이 경우 산입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가. (생 략) <u>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u> <u>기간 중 제9조제3호에 따</u> <u>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u> <u>는 기간</u> 다. (생 략) ② ~ ④ (생 략)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 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 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u>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u> <u>도의 소득이 없는 자</u> <u>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u> <u>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u> <u>되는 자</u> <u>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u> <u>자 및 임의계속가입자</u> <u>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u> <u>직연금등수급권자</u> 2. (생 략) <u>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u>	-----. 가. (현행과 같음) <u><삭 제></u> 다.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지역가입자) ----- ----- ----- -----, ----- ----- -----. <u><삭 제></u>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4. 5. (생 략)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생 략)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3호 또
는 제4호의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2. (생 략)

3.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4.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③ (생 략)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 (생 략)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
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4. 5. (현행과 같음)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후단
삭제>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 4. (생략) 5.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 (생략) ③ (생략)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 7. (생략) <u><신설></u>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 -----. 1. ~ 4. (현행과 같음) <u><삭제></u>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100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u>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u>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 ----- -----
--	---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
(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
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
를 내지 아니한 기간

1의2. ~ 3. (생략)

② ~ ⑥ (생략)

<신설>

-----.

1. -----
-----제9조제4호-----

1의2.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 최
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①
18세가 된 날 소득이 없는 지
역가입자는 18세가 된 날이 속
하는 달부터 3개월간 해당 월
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
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 중에
본문에 따른 지역가입자가 사업
장가입자가 되거나 제21조에 따
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부
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18세가 된 날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사람은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3개월에서 제1항 본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개월 수를 제외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지역가입자의 해당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전액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u>제100조의5</u>(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생략)	<u>부담한다. 이 경우 산업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00조의6</u>(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현행 제100조의5와 같음)
---	--